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3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2월 6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먹거리 정책의 심의·자문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중복기능 조정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종류 및 기능을 개편하고자 함.
또한 분과위원회 조정에 따라 위원수를 적정화하고 위원장 직급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, 위원회 운영 결과가 정책적으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운영회의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체계 개편에 따른 위원수 축소 및 위원장 변경 (안 제23조, 제24조)

-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변경, 위촉위원의 요건 구체화 및 위원의 연임 횟수를 1차례로 축소 (안 제23조)
- 위원장을 시장에서 시민건강국장으로 변경 (안 제24조)

나. 위원회 고문 조문 삭제 (안 제25조)

다. 위원회 회의 횟수 변경 (안 제26조)

- 정기회의 반기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

라. 기획조정위원회 조문삭제 (안 제27조)

마. 분과위원회 종류 및 심의·자문 내용 변경 (안 제28조)

- 7개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기능 개편
- 분과위원회 회의 분기 1회 개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입법예고(2022. 11. 10.~11. 30.) 결과 : 별첨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: 별첨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105명 이내(당연직 제외)”를 “30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임명 또는 위촉하는”을 “위촉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2차례”를 “1차례”로 한다.

1. 먹거리 분야 전문가, 학계,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
2. 먹거리 분야 기관, 협의회,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
3. 그 밖에 먹거리 분야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24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시민건강국장”으로, “한다”를 “하고,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”으로, “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장이 직무를”을 “위원장 모두 직무를”로, “제27조에 따른 기획조정위원장”을 “부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25조를 삭제한다.

제2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“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”를 “연 1회 이상 개최하며”로,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시장”을 “위원장 2명 중 1명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27조를 삭제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같은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”를 “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1. 먹거리정책분과위원회 :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, 먹거리 보장 등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사업개발, 먹거리 통계 등에 관한 자문
2. 먹거리건강분과위원회 : 건강한 식생활·영양 실천 교육·홍보 및 활성화, 식문화 실천 사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항, 먹거리 정책 대시민 홍보활동
3. 먹거리환경분과위원회 :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(생산, 가공, 유통, 소비, 폐기·자원화)실행을 위한 정책발굴 및 실천 방안 자문, 국내·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지원

제28조제3항 중 “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”를 “분과위원장”으로, “15명”을 “10명”으로, “호선하고,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”를 “호선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격월”을 “분기”로, “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를 “분과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<u>105명 이내(당연직 제외)</u>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<u>임명 또는 위촉하는</u>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 : 행정1부시장, 여성가족정책실장, 복지정책실장, 평생교육국장, 시민건강국장</u></p> <p>2. <u>위촉위원: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<u>2차례</u>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</p>	<p>제23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30명 이내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위촉하는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먹거리 분야 전문가, 학계,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</u></p> <p>2. <u>먹거리 분야 기관, 협의회,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</u></p> <p>3. <u>그 밖에 먹거리 분야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 <p>③ ----- -- <u>1차례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24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7조에 따른 기획조정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⑤ 감사는 위원 중 호선하며,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25조(고문)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26조(위원회 회의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다음 각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위원장 등) ① ----- 시민건강국장-----
----- 하고,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

② ----- 위원장 및 부위원장-----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위원장 모두 직무를 -----
----- 부위원장-----

<삭제>

<삭제>

제26조(위원회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연 1회 이상 개최하며-----

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2. (생략)
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③ ~ ⑥ (생략)

제27조(기획조정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.

②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, 지명된 기획조정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기획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장 2명, 당연직 위원,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기획조정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

---어느 하나에-----
-----.

1. 위원장 2명 중 1명 이상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요업무에 관한 협의·조정

2. 위원회의 예산·결산에 관한

총괄 조정

3.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

급을 요하는 사항

⑤ 기획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격
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
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
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
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
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·
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
고,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
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1. 공공급식분과위원회 : 도농상
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
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, 공공
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, 영
양개선, 공공급식의 건강먹거리
조달체계 확립

2. 도시농업분과위원회 : 도시농업
활성화,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
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

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

----- 같다.

1. 먹거리정책분과위원회 : 건강
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, 먹거리
보장 등에 대한 정책자문 및 사
업개발, 먹거리 통계 등에 관한
자문

2. 먹거리건강분과위원회 : 건강한
식생활·영양 실천 교육·홍보 및
활성화, 식문화 실천사업 발굴
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항, 먹거리
정책 대시민 홍보활동

3. 식품안전분과위원회 :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시민교육, 식품안전사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,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

4. 먹거리생태·상생분과위원회 : 먹거리 관련 도농상생 활성화,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, 먹거리 자원순환(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화 등)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

5. 먹거리건강·보장분과위원회 :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(영양부족,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)을 위한 지침개발, 먹거리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, 재난 대비 서울 시민의 먹거리 보장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

6. 먹거리공동체분과위원회 :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, 이해관계자(시-자치구-먹거리공동체 등)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, 먹거리공동체와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

3. 먹거리환경분과위원회 :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(생산, 가공, 유통, 소비, 폐기·자원화)실행을 위한 정책발굴 및 실천방안 자문, 국내·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지원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발굴 및 전략구축 등 지원활동

7.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

회 :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구현을 위한 먹거리시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활동, 지속가능한 먹거리문화 정착 및 행복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, 먹거리 전략 2030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활동

② (생략)

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
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로 하되,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.

<삭 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분과위원장 -----
----- 10명 -----

----- 호선한다.

④ ----- 분기 -----
----- 분과위원장 -----

-----.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서울먹거리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 축소 반대 (위원장 하향, 회의 횟수, 분과위원회 축소) - 먹거리 정책 추진 시 전문 분야의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정책 수립기능 미흡해 질수 있음 - 먹거리 정책 추진 의지 약화 및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 어려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-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수 적정화 등에 따라 (조직담당관-20611, '22.4.7.) 중복된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고, 다양한 시민참여 확대 및 먹거리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재조정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임
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 축소 반대 (분과위원회 축소, 연임 횟수 축소, 위원장 하향) 	
일반시민 (이빈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 축소 반대 (위원회 업무 조정, 위원장 하향, 회의 횟수 축소) 	
일반시민 (윤병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 축소 반대 (위원회 업무 조정, 위원장 하향, 회의횟수 축소, 기획조정위원회 폐지) - 분과 재조정, 정기회의(반기1회)조정 - 기획조정위원회 준치 및 위원장 재조정 	
일반시민 (서우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유지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한 농업과 학교 급식이 가능함 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반영 · 농업 및 학교 급식 사항은 해당 업무 부서(도시농업, 친환경급식)에서 고려할 사항임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유혜은 (02-2133-4720)